

네이버 주식회사

이사회 운영규정

| | |
|----|------------|
| 제정 | 2002-10-01 |
| 개정 | 2006-11-07 |
| 개정 | 2011-08-10 |
| 개정 | 2013-08-07 |
| 개정 | 2016-12-14 |
| 개정 | 2020-07-29 |
| 개정 | 2021-03-24 |
| 개정 | 2023-02-02 |
| 개정 | 2023-12-20 |
| 개정 | 2026-03-23 |

NAVER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이사회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무와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03.23>

④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조의2(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결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23>

④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⑥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3(자문) ①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가 전항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문의 배경, 내용 및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03.24>

제3조의3(자문) ① 독립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07.23>

② 독립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가 전항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문의 배경, 내용 및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03.24; 개정 2026.07.23>

제3조의4(운영규정) 이 운영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장. 구성

제4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정관 제35조에서 정하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대표이사 또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초 이사 선임일 기준 가장 먼저 선임된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선임된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하거나, 이사회에서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14>

제6조(사무국) ① 이사회는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관련 1개 부서를 당해 부서의 사내조직상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사무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장은 이사회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이사회 운영 실무를 담당할 직원 수명을 사무국에 둘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7조(회의의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격월 1회, 연 총 6회 이상을 개최하고, 매년의 최종 이사회에서 차년도 예상 일정을 계획한다. <개정 2023.02.02>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의장이 소집하며, 본 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의장이 아닌 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이사는 제1항의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하였는데도 소집권자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소집절차)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개최 시기 및 장소 그리고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일의 3일 전까지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결의방법) ① 관계법령에서 보다 강화된 결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는 이사 5분의 3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결의의 유형은 아래 각호에 따른다.

1. 승인 : 원안의 내용과 다름 없이 가결함
2. 수정승인 : 원안의 내용 중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여 승인함
3. 보완 : 원안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보완을 지시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반드시 재결의함
4. 부결 : 원안의 내용 전체에 대하여 부결하며, 동일한 사업년도 이사회에 재부의할 수 없음
5. 보고완료 : 보고사항의 보고를 완료함

③ 이사회 출석 인원 중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14>

④ 본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14>

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의안건과 관계된 임·직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사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결의서) ① 회의 당일에는 안건의 주요 내용과 제10조 제2항 각호의 결의의 유형을 명시한 안건별 결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각 이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는다.

② 간사는 제1항의 결의사항을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사록) ① 간사는 제11조 제1항의 결의서를 바탕으로 이사들의 발언의 요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각 이사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차기 이사회에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 받아 이사회에서 정한 안전한 장소에 원본과 부본을 결의서와 함께 보관한다. <개정 2023.02.02>

② 이사회 의사록은 주주의 공개 요구가 서면으로 접수된 경우, 이사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해당 사안에 한하여 공개한다.

③ 공개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명의로 거절의 의사를 공문으로 전달한다.

제4장. 부의사항

제13조(부의사항의 종류)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은 결의사항, 보고사항, 논의사항으로 구분한다.

1. 결의사항 :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승인, 수정승인, 보완, 부결로 결의함
2. 보고사항 :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결의에 갈음함
3. 논의사항 : 차기 이후 회의에 부의될 사항으로 사전 논의가 필요한 경우 부의하며, 결의를 요하지 않음

제14조(결의사항) ①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호에 대해 결의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상법 제362조)
2.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상법 제447조, 제447조의2 제1항)
3. 정관의 변경(상법 제433조)
4. 자본금의 감소(상법 제438조)
5.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상법 제517조, 제522조, 제530조의2, 제519조)
6. 주식의 소각(상법 제34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간이영업양도 또는 양수, 임대(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제374조의3) <개정 2026.03.23>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상법 제374조 제1항 제2호) <개정 2026.03.23>
9.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상법 제417조)
1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상법 제400조)
11. 주식배당 결정(상법 제462조의2)
1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제542조의3)
1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제5호)
14.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상법 제382조, 제385조, 제409조, 제415조, 제542조의12) <개정 2026.03.23>
15. 이사의 보수 한도(상법 제388조)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への 보고(상법 제542조의9 제3항 내지 제5항)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②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활동에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중요성에 따라 다음 각호에 대해 결의한다.

1. 연간 경영계획 및 수정 경영계획의 승인
2. 중요한 신규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결정 <개정 2016.12.14>
3. 지점,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상법 제393조 제1항)
4.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상법 제527조의2, 제527조의3, 제530조의11)
5.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상법 제526조 제3항, 제527조 제4항)
6. 경영활동상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 가.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중요한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 나.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단일 판매 및 공급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다. 사업 운영상 중요한 기술의 도입, 이전, 제휴 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라. 기타 경영상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7. 중요한 소송의 제기

③ 이사회는 “회사”의 조직 및 인사운영에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중요성에 따라 다음 각호에 대해 결의한다.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상법 제389조 제1항)
2. <삭제 2023.02.02>
3. <삭제 2023.02.02>
4. 공동대표의 결정(상법 제389조 제2항)
5.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상법 제393조 제1항)
6.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금 출연
7. 상담역 및 고문의 선임

④ 이사회는 “회사”의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중요성에 따라 아래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결의한다.

1. 출자금액이 최근 사업년도 말 “회사”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
2. 지분의 보유목적이 아래 각 목에 해당하며, 당해 투자의 결과로 상장법인인 당해 피투자법인의 전체 지분 중 100분의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출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개정 2026.03.23>

가.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나.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다.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라. <삭제 2026.03.23>

마.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및 분할

사.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자.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양도

차.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임대, 경영위임,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카. “회사”의 해산

3. <삭제 2020.07.29>

4. 취득가액이 최근 사업년도 말 “회사” 자산총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의 취득

5. 취득가액이 최근 사업년도 말 “회사” 자산총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의 취득 및 무형의 권리 사용권 대가 지급

⑤ 이사회는 “회사” 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중요성에 따라 아래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결의한다.

1. 제4항 결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기준 100분의 50 이상 처분, 단, 계약기간의 만료 등 거래 상대방과 사전에 협의된 바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을 종료하게 된 때는 제외

2. <삭제 2020.07.29>

3. 처분가액이 최근 사업년도 말 “회사”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인 출자지분의 처분

4. 처분가액이 최근 사업년도 말 “회사” 자산총액의 1,000분의 25 이상인 유·무형자산의 처분

5.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⑥ 이사회는 “회사”의 재무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법령 및 중요성에 따라 심사하고 결의한다.

1. 이익 및 결손의 처분

2. 신주의 발행(상법 제416조)
 3.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제461조 제1항)
 4. 전환사채(상법 제513조 제2항), 신주인수권부사채(상법 제516조의2 제2항)의 발행
 5.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결정
 6.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작성 및 승인 <개정 2026.03.23>
 7. 주식의 병합 및 분할 결정
 8. 중간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결정
 9.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의 결정
 10. 사채의 모집(상법 제469조)
 11. 자금의 차입, 대여 <개정 2016.12.14>
 - 가. 최근 사업년도 말 “회사” 자기자본의 1,000분의 50 이상의 자금 차입
 - 나. 최근 사업년도 말 “회사”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자금 대여 <개정 2020.07.29>
 12. 타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 담보 제공 및 채권의 포기(채무의 면제), 인수
 - 가. 최근 사업년도 말 “회사”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타법인의 자금 차입에 대한 채무 보증 및 담보 제공 <개정 2016.12.14>
 - 나. 최근 사업년도 말 “회사”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포기(거래처의 채무 면제) 또는 인수 결정 <개정 2016.12.14>
- ⑦ 이사회는 이사 및 이사회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중요성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1. <삭제 2026.03.23>
 2.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상법 제393조의2)
 3.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상법 제393조의2)
 4. <삭제 2020.07.29>
 5. 이사 보수(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범위에 한함) <개정 2026.03.23>
 6.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7. 이사의 경업 승인(상법 제397조)
 8. 이사의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이용의 승인(상법 제397조의 2)
 9.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상법 제398조)
 10. <삭제 2023.02.02>
 11. 이사회 운영규정 및 위원회 운영지침의 제·개정
 12. 이사회 의장의 선임
- ⑧ 이사회는 계열회사간 주요 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개정 2016.12.14>
1.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다음의 거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개정 2026.03.23.>
 - 가. 동 법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 <개정 2026.03.23.>
 - 나. 분기 거래 합계액을 기준으로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20% 이상을 출자한 회사 또는 그 자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회사를 위하여 상품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 <개정 2020.07.29>
 2. 기타 중요한 거래에 대한 승인
- ⑨ 이사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의한다.

⑩ 상기 결의사항의 부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안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되, 대표이사는 개별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15조(보고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사안별 관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위원회 운영규칙으로 별도로 정한 기간 동안의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경과
3.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상법 제391조의2 제2항, 제415조의2 제6항)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관계부서장이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이사회에 결의를 갈음한다.

1. 분기별 결산 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보고
3. 법령에 의한 자산재평가의 최초 실시 결정 및 최근 사업년도 말 “회사” 자산총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재평가차액이 발생하는 자산재평가 <개정 2016.12.14>
4. 자회사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 중 “회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개정 2016.12.14>
5.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③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대해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진행 경과 또는 결과에 대하여 관계부서장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1. 신규사업의 추진
2. 국내외 지법인의 설립
3.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4.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결의사항

④ 상기 보고사항 이외의 유사한 사안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되, 대표이사는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6조(결의의 위임)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5장. 위원회

제17조(위원회의 종류) ① 정관 제4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거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한시적으로 임시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위원)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이사로서의 임기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위원장)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이사 선임 시기 등을 고려하여, 각 위원회의 위원 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이사로서의 임기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위원회의 간사) ① 각 위원회에 대한 업무연관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회사" 임원(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을 포함함, 본 규정에서 같음)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회 간사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3.02.02>

② 위원회 간사는 이사회 간사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위원회 운영규칙 제·개정, 회의 일정 수립, 회의 진행 및 결의서, 의사록 작성 등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2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의사록의 작성 등 회의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별 운영지침에 따르되, 운영지침은 위원회의 간사가 이사회 운영규정에 준하여 작성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확정한다.

② 위원회의 사전심의사항 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의장은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생략하고 직접 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때, 이사회는 해당 부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결의사항 통지 및 이사회의 재결의) ① 위원회는 결의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통지 받은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 의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에 관한 보칙) 이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전면개정)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0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0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2026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한다.